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19 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전진숙・안도걸・양부남

정준호 • 이수진 • 박희승

조인철 · 정진욱 · 민형배

권칠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, 「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「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법률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,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

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0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"사고"를 "사고(「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	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
설치・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	설치 • 운영) ①
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	
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	
이 조에서 "심리지원"이라 한	
다)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	
센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	,
1. 재난이나 그 밖의 <u>사고</u> 로 정	1사고(「국
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	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
가족	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
	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
	<u>경우는 제외한다)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